65㎡를 초과하는 것으로 객실 면적이 영업장면적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 대상으로 하였다. 이 경우 유흥접객원 종사여부는 상시 고용이외의 것도 포함된다. 또 '99.12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증기탕에 대한 근거가 삭제 되었으므로 「증기탕」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13) 대도시내 법인 중과규정의 정비(영제101조 · 제102조)

대도시내 신설법인이 중과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법인등기에 대한 안분기준이 없어 중과제외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등록세를 모두 중과하였으나,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직전사업연도(중과제외업종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총매출액에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중과하도록 하였으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중과하도록 하였다.

### 14) 자동차세 비과세대상 추가(영제146조의2)

자동차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제시기간에 한함)를 추가하였다.

종전에는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시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의 50%를 경감하던 것을 제시기간중에는 자동차세가 비과세되도록 함에 따라 제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와 관련한 민원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2000년에 제시되어 2001년에 판매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는 2000년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제시자동차에 한해서 50%경감하고, 2001년은 제시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비과세하면 된다.

### 15)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규정 정비(영제195조, 규칙제105조)